

■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재난안전교육 운영규정[별지 제2호 서식]

『개인 안전교육 및 CMS 신청서』

소속기업정보	기업(법인)명		대표자	(서명)	
	납부목적	기관(기업) 교육 / 관리		e-mail	
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연락처		
	주소				
< 6대 안전 교육 '종사자 전원 · 특수형태근로자 포함' > 「비대면 교육 4개까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가능」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안전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연재난안전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동학대예방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안전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범죄안전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안전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기반 체계 (심폐소생술, 응급조치 교육)					
6대 안전 교육 자동이체 신청내용 (이수증 발급 : 연 1회)					
신청정보	신청인	예금주와 관계 ()		연락처	
	납부금액		납부일	매월 ()일, ()일	일 재출금
금융거래정보	납부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계좌 (CMS)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		결제자명	
	결제사명 (은행 or 카드사)	카드결제 시 : 유효기간 (월/ 년)		결제자 휴대전화번호	
	결제번호 (계좌번호 or 카드번호)		실명번호	생년월일/성별	사업자등록번호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	※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※ ■ 수집 및 이용목적 : 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납부 ■ 수집항목 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은행명, 예금주명, 계좌번호 ■ 보유 및 이용기간 : 수집/이용 동의일로부터 자동이체 종료일(해지일)까지 ■ 본 개인정보 수집은 안전교육 신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■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.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
관련 법률	■ 안전교육법「법률 제16878호」 제 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 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용자에게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. ■ 재난안전법「법률 제17479호」 제34조 6 '다중이용 시설 등'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안전교육 및 위기상황 대피훈련 교육 등을 실시한다. 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「법률 제17907호」(약칭 : 중대재해처벌법)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재료를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 ■ 어린이안전법「법률 제17312호」 「어린이 안전법」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제10조,제11조,제12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제16조,제17조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다.				
안전교육 이수증 등의 비용처리 안내	■ 안전교육 및 체험 실습은 무료로 제공하며 이수증 비용은 자부담입니다. (발급비용 3만원) 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* 연간 교육비용 소득공제 한도 내) ■ 개인·법인 사업자의 경우(비용처리 : 계산서 발행) 사업자 등록번호기재			이수증 발급 유형(택1)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홈페이지인쇄 / 기관 제출용	
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등의	※ 사업주는 시설종사자, 근로자(특수근로자 포함)에게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. ※ 시설종사자 및 근로자(특수근로자 포함)는 사업주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			사업주 (안전관리자)	홍길동 (서명)
	※ 의무교육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본인 · 안전교육 · 대상자는 교육에 시행함에 있어 교육 참여 의사가 없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 시 위 규칙들을 어겨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으로 의무안전교육을 안내(권장)한 사업주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 ※ 안전교육, 안전교육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. ※ 그 밖에 안전을 위해 재난 안전교육 기관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이행하여야 합니다.			종사자 (교육대상자)	홍길동 (서명)

20 년 월 일